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56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권칠승 · 박균택 · 김영환
이재관 · 양부남 · 이성윤
김기표 · 이상식 · 박해철
이연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핵심적 기본권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평화로운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바168 등)을 선고한 바 있음.

이에 사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집회 주최자가 사전 신고 위반을 제외한 다른 법령 위반이 없고, 교통·보행

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집회 장소의 권리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유지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제1항(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회(시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주최한 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집회가 종료될 때까지 다른 사람의 보행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회 장소의 사용과 관련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권리자에게 사전에 허락받거나 승인받아 다툼이 없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벌칙) ① (생 략)</p> <p>②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 ④ (생 략)</p> <p>제26조(과태료) ① (생 략)</p> <p><u><신 설></u></p>	<p>제2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6조제1항(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p> <p>-----</p> <p>-----</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2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회(시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주최한 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6조제1항을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p> <p>2. 집회가 종료될 때까지 다른 사람의 보행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p> <p>3. 집회 장소의 사용과 관련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권리자에게 사전에 허락받거나 승인</p>

② (생략)

받아 다툼이 없을 것

③ (현행 제2항과 같음)